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형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10

발의연월일: 2022. 9. 23.

발 의 자:이형석·조응천·조오섭

송갑석 • 이용빈 • 김정호

이성만 • 한병도 • 강선우

이해식 · 안규백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스토킹 신고가 급증하고 있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2년 9월 14일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음.

특히, 이번 신당역 피살 사건의 피의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직원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이기에 사회적 공분을 일 으키고 있음.

이에 스토킹 범죄 이력을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6호의3)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6호의3 중 "제2조에"를 "제2조 및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33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	
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	
1. ~ 6의2. (생 략)	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	6의3
에 관한 특례법」 <u>제2조에</u> 규	제2조 및
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	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
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	한 법률」 제2조에
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	
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
6의4. ~ 8. (생 략)	6의4. ~ 8. (현행과 같음)